

수원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03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1나103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78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송아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영주

변론 종결 2021. 12. 2.

판결 선고 2022. 2. 2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78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2016. 10. 28. 체결된 [별지] 기재 사업권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95,1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P 사이에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9.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2017. 11. 24.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2,895,106,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95,1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의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피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건설자재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 매매, 분양,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V이 2008. 8. 7.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9. 10. 9. 사임하고 2019년경 49.90%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W이 2019. 5. 10.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는 2016. 12. 8.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W은 위 설립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V은 2017. 3. 15.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V과 W은 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 2)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2016. 11. 2. 'F 주식회사'로, 2018. 7. 2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C'라 한다)와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였으나 2018. 7.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포함하여 'G'라

한다)는 D이 각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이다.

나. 제1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

C는 2016. 3. 24. 시흥시 L 대 29,699.3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¹⁾에 관하여 위탁자 C, 수탁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 피고회사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형신탁계약'이라 한다), 2016. 3. 31. P으로부터 23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4.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신탁계약에 기한 Q 명의의 신탁등기를 마쳤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제1대출에서 시공사로서 책임준공²⁾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C의 P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사업양수도계약서 작성

C와 피고회사는 2016. 10. 28. C가 피고회사에게 [별지] 기재 사업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제1대출 변제, 제2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T는 2017. 6. 29. P 및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로부터 180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C의 P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의 원금채무 230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관리형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등기는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C는 2017. 6. 29.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시흥시 L, M, N, O 합계 28,558.5m², 이하 '원고 주장 대상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C, 수탁자를 P,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P 및 AA, 위탁자의 업무대행자 겸 2순위 우선수익자를 T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확약서 작성

C는 2017. 10. 17. 피고회사 또는 T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피고회사 또는 T가 지정하는 자에게 원고 주장 대상부지 중 하나인 시흥시 L 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제2대출 채권양도 및 신탁원부변경계약

1)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3)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J(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운용하였다.

2)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7. 11. 24. P 및 AA과 사이에, K이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채권 18,149,817,687원을 양수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K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는 피고회사, T, V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AB, V이었다.

3) C는 같은 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1순위 우선수익자를 K으로 변경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증액하며, 3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회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각 신탁원부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형신탁계약,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따른 각 우선수익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1 P	C	299억 82억 1,400만	1 P	T	204억	1 K	T	234억
1 AA	T	12억						
2 피고회사	C	230억 1,400만	2 T	C	230억	2 T	C	230억
		3 피고회사	C, G	115억				
계 381억 1,400만	계 446억	계 579억						

사. 공매 및 우선수익자의 지위 양도

1) K은 2018. 3. 5.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의 수탁자인 P에게 2018. 1. 24.자로 이 사건 제2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원고 주장 대상부지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P은 2018. 3. 20. 지역신문에 원고 주장

대상부지에 관한 공매 공고를 게재하였다.

U과 K은 원고 주장 대상부지의 공매를 위하여 그 시장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사 AC은 원고 주장 대상부지의 2018. 3. 9. 기준 가치를 35,323,29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2) 한편 T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 및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C에 대한 채권을, 피고회사는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3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 및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C와 G에 대한 각 채권을 각 2018. 3. 28.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K에게 양도하였다.

3) K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공매대금 366억 원으로 원고 주장 대상부지를 낙찰 받고, 2018. 3. 30. 원고 주장 대상부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위 공매대금을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의 1 내지 3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모두 배분받았다.

아. 어음반환

C는 2018. 4. 27. 피고회사 및 V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관계회사(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로부터 C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55억 6,120만 원의 어음을 반환받고, G는 같은 날 피고회사로부터 G가 발행한 액면금 합계 44억 3,600만 원의 어음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7, 13, 16, 19, 20, 21, 23, 25 내지 27, 29호증, 을 제2, 3,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P, Q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8행부터 제3면 하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8행 "가. 청구원인"을 "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12행 "C 주식회사"부터 같은 면 14행 "이하 'G'라고 한다)"까지를 "C 및 G"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4행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를 "피고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3, 하2행 "[별지] 기재 사업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1행부터 제3면 1행까지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가"를 "U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행 "J"를 "이 사건 펀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2행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를 "K"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2행 "[별지]"부터 같은 면 4행 "이하 '원고 주장 대상부지'라고 한다)"까지를 "원고 주장 대상부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7행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제1대출 채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9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10행 "나."를 "다."로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C와 P 사이에 각 2017. 6. 29. 체결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2017. 11. 24. 체결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은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895,106,8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895,106,84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11행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4행 "하더라도," 다음에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C의 주식을 양수받음으로써 피보전채권은 소멸하였고, ④"를 추가하고, 같은 면 17행 "④"를 "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5, 16행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를 "Q"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하2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모두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대물변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양도하려는 목적물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1행부터 제11면 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3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4행 "③ 및 ④"를 "④ 및 ⑤"로 고쳐 쓴다.

『피고회사의 주장 중 ③의 경우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30. D로부터 C 주식 지분 25%(각 명의상 주주는 AG 20%, AH 5%)를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식 이전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전채권의 담보로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4행, 제7면 5 내지 8행, 제8면 4행의 각 "피고"를 "피고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2행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를 "Q"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2행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P"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 "매매(공매)를"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5행 "AI"을 "AJ"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9, 10행 "Q"을 "Q"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5행 "I"을 "U"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13행의 "피고 처분되었음을"을 "피고에게 처분되었음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5행 "주식회사 Q"을 "Q"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3행 "대상부지"를 "원고 주장 대상부지"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 원고는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원고 주장 대상부지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K은 원고 주장 대상부지를 해당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이후 K이 원고 주장 대상부지를 낙찰 받기까지 원고 주장 대상부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C, 피고회사 뿐 아니라 피고회사의 관계회사 및 금융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된 모든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이행으로써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K이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이고 이 사건 펀드의 출자자들이 피고회사 및 피고회사의 관계회사라 하여 K이 원고 주장 사업부지를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을 두고 C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2017. 10. 17.자 확약서에 따라 원고 주장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피고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C와 피고회사가 2016. 10. 28. C가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는 C의 재정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어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만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전까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C의 P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출 채무 230억 원을 중첩적으로 인수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C와 피고회사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중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 정한 바와는 달리 진행된 일련의 사실관계, 즉 T가 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C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펀드가 운용되었고,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K이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기까지의 사실관계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피고회사의 주장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작성된 것으로 그 후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 합의해제(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법 제8조가 규정하는 사해신탁취소의 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위 신탁법 규정에서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사해신탁취소의 소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1009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나. 판단

- 1)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 12. 13. 갑 제13호증(신탁원부)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일은 2019. 11. 7.인 사실, 원고는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11. 23.자 및 2021. 2. 3.자 각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서를 통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의 취소, 가액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행일인 2019. 11. 7. 무렵에는 위 계약들이 사해신탁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가 2020. 11. 23. 행사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 각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변경계약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주장 대상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이행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신탁원부를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발행일 무렵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피고회사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

별지

1) 위 토지는 2017. 2. 1. X 대 137.2m², Y 대 650m², Z 대 353.6m²가 각 분할되었고, 2017. 4. 12. M 대 7,942m², N 대 6,804m², ○ 대 6,899.2m²가 각 분할되어, 현재는 L 대 6913.3m²가 되었다.

2) '책임준공'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불가항력 이외의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유치권이 없는 상태로 대출만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전까지 건축물을 관계 법률에 부합하도록 완공하는 것을 말한다['대출 및 사업약정서' 제9조 2항 (2)호(을 제2호증 제38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제6조 제5항),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제6조 제4항), "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6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4항).

4) 2016. 12. 31. 기준 감사보고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C의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58,184,000,000원이 많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